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양승현 연구위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 10월 말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됨
 - 금소법은 법 적용대상, 각 규제의 적용범위, 판단기준 및 절차 등 주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금소법의 적용범위 및 규제의 내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입법예고안은 보험상품은 보장성상품으로,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하여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제함
 - 보험계약과 일체로 이루어지는 보험약관대출을 별도 금융상품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유형으로 판매업자 등이 자체점검, 민원, 감독·검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추가함
 - 행정기관 내지 법원의 적법절차에 따른 판단 없이 금융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규제 명확성 및 법 체계 정합성 등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새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특히 행사기간, 정당한 사유, '계약 해지 관련 비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면밀한 검토 및 합리적 규정이 필요함
 - 입법예고안은 행사기간을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여 장기간 계약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음
 - 해지 효과로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 해지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감독당국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바, 보험업 발전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업계, 학계,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이라 함)이 지난 10월 말 입법예고¹⁾됨
 -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 권역의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금융통합법률로서 올해 초 제정되어 내년 3월 말 시행될 예정임
 - 개별 금융법에 산재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들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하에 통합하여 규율함
 - 사전 정보제공 및 사후적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도모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
- 금소법은 동법 적용대상(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범위), 적합성·적정성원칙 등 각 규제의 적용 범위, 판단기준 및 관련 절차 등 주요 사항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함
 -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금소법 시행 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금소법의 적용범위 및 규제의 내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본고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함

2.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가. 금소법의 적용대상(금융상품 및 수범자의 범위)

- 금소법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 대상으로 함
 - 금융상품은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의 4유형으로 분류(법 제3조)하며, 그 중 보험상품은 보장성상품에 해당됨
 - 입법예고안의 내용 중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보험상품 외의 보장성상품 및 보험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대출성상품의 범위가 문제됨

1) 의견제출기한은 2020. 10. 28. ~ 2020. 12. 6.이었음

- 보험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기타의 보장성상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계약만을 규정하고 있음(입법예고안 제2조 제1항 제5호)
 - 신협 공제 외 상호금융(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우체국 보험 내지 공제는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열거하지 않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함²⁾
- 대출성상품에 관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 및 그와 유사한 것’으로 폭넓게 적용함(입법예고안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금의 선급금이라는 법적 성격상 금융상품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던 보험약관대출³⁾을 금융상품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대출 역시 금융상품으로 규율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됨⁴⁾

■ 금소법은 이러한 “금융상품”의 판매 내지 자문을 업(業)으로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⁵⁾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수범자로 함

- 금소법은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새로 도입하고, 등록된 자문업자 외의 자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함(금소법 제11조 및 제12조)
 - 입법예고안은 보험대리점 등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에 관하여 자문하는 경우를 금융상품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⁶⁾

나. 영업행위 규제 관련

■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이른바 6대 영업행위 규제의 적용 범위, 세부 내용, 판단기준,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

- 입법예고안의 내용 중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 취급 대출 관련 적합성원칙 적용 범위 및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특히 주목할 만한
 - 보장성상품에 관한 적합성원칙의 적용 범위를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손익이 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에 반영되는 상품⁷⁾으로 규정함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10. 28),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0. 28.~12. 6.)”, p. 2 참조

3) 생명보험표준약관은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통상 보험약관대출이라는 용어로 통용됨

4) 연합인포맥스(2020. 10. 27), “금융위, 약관대출도 금소법 적용대상” 참조

5)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나뉘며, 보험회사는 직접판매업자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는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속함

6) 입법예고안 제2조 제4항 제2호는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열거함

7) 입법예고안 제2항 제1호는 ‘변액보험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반영되는 상품’을 적합성원칙 적용대상으로 열거하는바, 이는 이른바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한편,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원칙을 적용하는바, 입법예고안이 약관대출을 금융상품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써 약관대출에도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그 밖에 추가적 금지사항 등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6대 영업행위 규제 관련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구분	개념 및 주요 내용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적합성 원칙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및 모든 대출에 적용 적합성 판단기준, 판매업자 등이 파악하여야 할 정보의 세부내용 등 시행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성상품 적용범위를 변액보험, 자산연계형 보험상품 등으로 규정(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등)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예외 규정 없음 적합성 판단기준(동조 제5항, 별표 4) 및 판매업자 등이 파악하여야 할 정보의 세부내용(동조 제6항, 별표 5) 열거
적정성 원칙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확인 의무 부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및 대출에 적용 적정성 판단기준, 판매업자 등이 파악하여야 할 정보의 세부내용 등 시행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액보험, 자산연계형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담보대출(주택담보, 증권 등 시장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등)에 적용(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적정성 판단기준(동조 제6항, 별표 4) 및 판매업자 등이 파악하여야 할 정보의 세부내용(동조 제7항, 별표 5) 열거 적정성 판단보고서 및 금융상품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동조 제4항)
설명 의무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보험상품, 대출, 연계·제휴서비스 등)의 주요 내용 설명 상품별 설명 사항, 절차 등 시행령 위임 설명서 제공의무(시행령에서 예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별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안 제13조) 법률상 규정된 설명서 외에 핵심설명서의 제공의무 규정(안 제14조) 설명서 제공의무의 예외에 관해 별도 규정 없음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월적 지위 이용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대출과 결부된 다른 상품 강요, 부당 담보·편익 요구 등 부당행위 및 3년 초과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연계·제휴서비스 등의 부당한 축소·변경 행위 등) 금지 추가 금지행위 등 시행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근보증·근담보, 대환대출을 통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민원, 감독·검사를 통해 ① 법 위반 사실 또는 ②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금지(안 제15조 제6항)
부당권유 금지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모든 보험상품 및 대출 등에 적용 추가 금지행위 등 시행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 설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사람의 권유 행위 금지 기존 계약 해지 및 그보다 불리한 상품 취득 권유 금지(안 제16조 제3항)
광고규제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판매업자 등의 광고 금지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포함/금지행위 규정 세부사항 시행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대리점 등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 원칙 금지(보험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허용) 금융상품 아닌 업무(사업분야 등) 광고 허용

다.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 금소법은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을 새로 도입하여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규제(광고규제 제외) 위반 시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은 해지권 행사요건(적용대상 및 기간 포함), 행사범위 및 계약 해지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폭 넓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표 2〉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구분	입법예고안 제38조 주요 내용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계약 해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행사기간 (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과 최초 보험료 납부일 또는 대출금 등 최초지급일 중 늦은 때로부터 5년(①과 ② 중 먼저 도달한 기간까지)
계약해지 시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 기타(금융위원회 고시로 재위임)
정당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중요 사항 거짓 기재·누락, 법 위반 근거자료 미제시, 계약 후 소비자 측 사정변경에 의한 법 위반 주장, 경미한 위반행위로 소비자 동의하에 기초치, 계약 체결 전 소비자의 법 위반사실 인지 등은 정당한 사유 해당 • 단, 해지요구 후 10일 이내 판매업자 등의 수락 여부 미고지, 정당한 사유 및 근거 미고지, 계약해지 불이익 반복·과장 설명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부인
계약해지 비용 (수수료, 위약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수수료, 위약금 등을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직접판매업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이라 규정

라. 기타

■ (내부통제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거나, 1사에 전속된 개인 판매대리·중개업자 등 적용 제외 요건을 규정⁸⁾함

■ (소액분쟁사건)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 금융회사의 제소가 금지(법 제42조 제2호)되는 소액분쟁사건 기준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인 2천만 원으로 규정함

8)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및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직접판매업자 및 자문업자, 1사에 전속되거나 소속 개인 대리·중개업자가 5명 미만인 법인 대리·중개업자(단,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 등(안 제10조 제1항 참조)

3. 검토 필요사항



- 첫째,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성상품으로 규제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등 주요 행위규제의 적용 요건인 '계약 체결 권유'를 어떻게 봐야할지 문제됨
 - 약관대출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⁹⁾인바, 법적 성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을 약관대출의 '계약체결'로 보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적합성원칙 적용이 없음에도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모집 시 언제나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반면 약관대출 실행을 '계약체결'로 보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통상 보험회사의 '권유' 없이 이루어 지므로 적합성원칙 적용이 없고,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설명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 한편,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의 재정 문제 상담 등을 상담하며 대출을 권유한다는 인식 없이 약관대출을 안내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미준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금융감독당국은 약관대출 실행을 약관대출의 '계약체결'로 보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보험회사 등의 법규 준수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각 규제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둘째,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에 추가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 명확성 및 적절성, 법 체계 정합성 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입법예고안은 판매업자 등이 자체점검, 민원, 감독·검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함(안 제15조 제6항 제6호)
 - 설령 위법 의혹이 있더라도 행정기관 내지 법원의 적법절차에 따른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규제는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함
 - 검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법행위 시정명령 및 그와 같이 조치를 받은 사실에 관한 공표명령 등(법 제51조 제2항)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애초의 법 위반 사실과 별개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 체계 적합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는 등, 규제 적절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기존 계약 해지 및 그보다 불리한 상품 취득 권유 금지(안 제16조 제3항)가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규정됨

9)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판결 참조

- 기존 계약과 새로운 상품은 유불리의 비교 가능성이 있을 만큼 유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 계약과 새로운 상품 간의 관계 내지 요건이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셋째, 새로 도입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정당한 사유, 금원 등 반환 범위를 결정하는 '계약 해지 관련 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입법예고안은 모든 상품에 대해 행사기간을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계약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음
 - 보험상품의 기간 내지 보장내용 등 상품별 특성에 따라 행사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안 후에도 1년의 행사기간을 두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상법상 계약 취소권 행사기간이 3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장기로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해지 요구 후 10일 안에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에 대한 통지 등을 요건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입법예고안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유예한 경우만 정당한 사유로 규정함
- '계약 해지 관련 비용'에 관한 규정은 해지의 효과인 금원 등 반환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해지의 효과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직접판매업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데, 금융상품별로 해지 시 구체적인 반환 범위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넷째, 입법예고안은 분쟁조정 중 소 제기가 금지되는 소액분쟁사건의 금액적 요건(법 제42조)을 획일적으로 법률상 상한인 2천만 원으로 규정함

- 금소법이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인 상황¹⁰⁾에서 이러한 획일적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 제기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약관 내용 관련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많은 보험회사의 경우, 개별 사건의 소가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에 분쟁조정 중 소 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달리 조속한 분쟁종결을 저해할 수 있음
- 사회변화에 따른 금액 조정 필요성에 대비하여 시행령에서 대략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10) 국회 정부위원회(2017), 「금융소비자보호법안·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p. 79 참조

4. 결어



- 앞서 본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예고안의 내용 중에는 향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의 법규 준수 및 소비자 권리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12월 중 감독규정 제정안도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인바, 보험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업계, 학계,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함 **kiri**